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공포(공포 : '22.10.18, 시행 : '23.4.19) 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23년부터 논활용직불제가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 시행됨에 따른 변동사항을 시행령에 수정 반영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공익직불제도 지원 안내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신설(법 제6조의2)됨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 가능성 확인 및 안내를 위해 농업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범위가 확대(법 제17조 제2항 개정)됨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며,

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활용직불제'가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명칭을 수정하고,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율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직불제도 지원 안내를 위해 농업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별표5 개정, 별표5의2 신설)

공익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 별표5의2로 규정하고, 별표5의 자료의 범위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관한 자료와 가족관계 등록사항 정보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제2항)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기존 준수사항과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에 더하여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

다. 논활용직접지불제를 전락작물직접지불제로 명칭 변경 및 변동사항 반영(안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논활용직불제를 전락작물직불제로 명칭 변경, 전락작물직불제의 목적에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율 제고를 명시, 전락작물직불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상한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항에 지급기간을 추가함

라. 전락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44조)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의 지급대상자를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시행령 “제5조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변경함

마.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의 권한 위임 확대(안 제63조)

공익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의 처리의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만이 위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외의 사항이 위임되었던 구분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불임(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의2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 제36조제2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 또는 농업인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법 제14조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할 당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정부전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료 제공 요청 및 결과 안내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작목”을 각각 “대상 재배작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목적 이외의 법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방식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장제4절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제도”를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논활용직접지불제도”를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율 제고”로, “논활용작물”을 “논에서 전략작물”로, “논활용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이하 “논활용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논활용작물”이란”을 ““전략작물”이란”으로,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율 제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율 제고”로,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논활용작물”을 각각 “전략작물”로 하고, 같은 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각각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논활용작물”을 “전략작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으로,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로, “논활용직접지불금 지

급대상자로”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로,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각각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율 제고”로, “논활용작물”을 “전략작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의”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간 및”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논활용직접지불금을”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처리(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처리”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관한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공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 정보에 관한 자료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자료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관한 자료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임야)대장,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자료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자료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관한 자료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검사·출하제한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에 관한 자료
12.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른 농약의 판매·구매 및 같은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1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14.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1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16.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비료 등의 농업자재 판매 및 농약 판매에 관한 자료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실시한 농업인 대상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

18. 「농지법」 제3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자료
19.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자료
20.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배출 등 금지, 방제조치 및 방제조치 이행 명령에 관한 자료
2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2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에 관한 자료
23. 「비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비료업자의 비료판매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비료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자료
2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자료
25.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26.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자료
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29.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30.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제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원상복구 등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
31.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자료
32.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3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3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3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한 자료
37.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에 관한 자료
38.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자

료

3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에 관한 자료

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41. 그 밖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자료

비고: 제3호, 제20호, 제24호, 제26호, 제30호, 제37호 및 제38호의 자료의 범위에는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자료를 포함한다.

제공 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제3조의2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 정보에 관한 자료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관한 자료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임야)대장,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자료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자료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관한 자료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검사·출하제한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10.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른 농약의 판매·구매 및 같은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료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자료
1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1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비료 등의 농업자재 판매 및 농약 판매에 관한 자료
15. 「농지법」 제3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자료
1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의 유종별 공급에 관한 자료
19.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2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자료
2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자료
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한 자료
2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에 관한 자료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정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27. 그 밖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의2와 같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 제36조제2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 또는 농업인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법 제14조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할 당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정부전자</u>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한 재배면적 조정의 무 부과 대상작목의 선정 및 부과 대상면적의 규모

3.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13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에 재배면적 조정의 무 대상작목, 부과 대상면적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료 제공 요청 및 결과 안내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대상 재배작물 -----

3. (현행과 같음)

③ -----

-- 대상 재배작물 -----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② (생략)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논활용직접지불제도

제42조(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논활용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목적 이외의 법 제19조에 따른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방식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

----- 전략작물 직접지불제도-----.

② -----

--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율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
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논활용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논
활용직접지불금(이하 “논활용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논활용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
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활
용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
장·군수·구청장등에게 위임
하여 시행한다.

제43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 ① 논활용직접지불
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
지(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으로
한다.

1. 2. (생 략)
3. 그 밖에 식량자급률의 증진,

제고 ----- 논
에서 전략작물-----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

③ ----- “전략작물”이란 ---
----- 양곡 수급
관리 및 논 이용율 제고 -----

-----.

④ ----- 전략작
물직접지불금-----

-----.

제43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
급대상 농지) ① 전략작물직접
지불금-----

-----.

1. 2. (현행과 같음)
3. -----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
을 위해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이 필요한 농지로서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농지

② (생 략)

제44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 ①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농업인등으로 한다.

1.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
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활용·관리하
는 자

2.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물 재
배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을
제고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
급대상자) ① 전략작물직접지불
금-----
-----.

1. -----

----- 전략작물-----

2. -----

----- 전략작물 -----

제5조에 따른 -----

②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생 략)

2.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3. 제50조제2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논활용작물 재배 등에 이용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5. (생 략)

제45조(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

1. (현행과 같음)

2. -----
----- 전략작물
직접지불금 -----

3. ----- 전략작물
직접지불금 -----

4. 전략작물 -----

5. (현행과 같음)

제4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조사·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에 논활용직접지불금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생략)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②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인-----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지-----.

③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위원회-----

-----.

④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제45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지급대상 농지면적, 재배작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농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 전략작물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 전략작물 직접 지불금 -----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 -----

③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

인지를 조사·확인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은 제45조제3항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 결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44조에 따른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면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7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식량자급률의 증진 또는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논을

-----.

④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제4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
-----.

1. (현행과 같음)
2. -----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을 제고 -----
-- 전략작물-----

활용 · 관리할 것

제48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 ①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이행하는지를 확인·점검한 후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48조(전·락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 ① 전·락작물직접지불금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락작물직접지불금
의 지급기간 및 -----

-----.

제49조(전·락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 전·락

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

----- 전·락작물
직접지불금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락작물직접지불금-----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논활용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제1항제1호에 대하여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

제50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로 한다)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한다.

1.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2. (현행과 같음)

② -----

이내의 범위에서 제45조에 따른
농활용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4.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
리(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5. ~ 7. (생 략)

②·③ (생 략)

제6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
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
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처
리 -----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

-----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에 관한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6. (생 략) ② (생 략)	----- ----- ----- -----. 1.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